[별지 1]

# 제규정 제·개정 사전예고

**1. 규정 명칭:** 「부실관리 및 채권보전 업무처리기준」

**2. 개정 이유:**

□ 위탁보증 이행을 위한 재산등록 등 절차 정비

**3. 개정 내용**

□ 위탁보증 재산등록 등 절차 및 특허권 등 기타채권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절차 정비 등

**4. 의견제출**

사전예고된 제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6일까지(도착일 기준)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신용보증기금 기업개선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① 사전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 :

② 제출자 관련 사항 : 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e-mail 주소

<보내실 곳>

| 담당자 | 전 화 | 팩 스 | e-mail 주소 | 주 소 |
|---|---|---|---|---|
| 김민선 차장 | 053-430-4411 | 0505-071-5133 | min917<br>@kodit.co.kr |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7(신서동),<br>13층 기업개선부 |

※ 홈페이지 경로 : 【정보공개】 ⇨ 【사규 공개 및 제·개정 예고】 ⇨ 【사규 제·개정 예고】